#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8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전진숙·윤건영·김한규

이해식 · 김남근 · 김남희

황정아 · 송재봉 · 양부남

이광희 • 이연희 • 문금주

권향엽 의원(13인)

####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다. 복지급여의 신청을 위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함(안 제 11조제2항).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 설).
-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하나 이 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 법률 제 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 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 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합한"을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교육"을 "학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을 "다음 각 호의 지원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과 홍보) (생 략)	과 홍보)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
	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
	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
	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
	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
	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
	<u>하여 실시한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
	항과 같음)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	2
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u>서면</u>	<u>서면</u>

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③ (생 략)
-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생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 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1. ~ 6. (생 략)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이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대
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u>학업</u> 지원) ①

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 업을 할 수 있도록 <u>청소년 한</u> 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지원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u>원을</u>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u>다음 각 호의</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